

아/동/청/소/년/성/착/취/문/제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3월 23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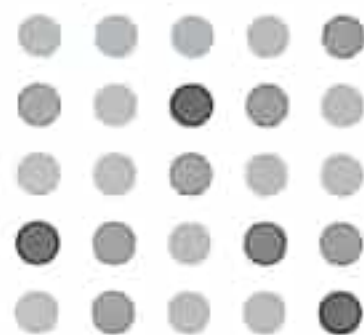
■ 주최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문/제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Ⅰ 일시 : 2015년 3월 23일(월) 오후 2시~5시

Ⅰ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Ⅰ 주최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순 서

시 간	내 용
13:30-13:50	접수 및 등록
14:00-14:10	사회 :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인사말, 내빈소개 및 축사, 참가단체 소개
14:10 14:50	토론회 사회 : 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발제 1.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 - 법개정 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 : 박숙란(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 2.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 대안마련 시스템구축을 위해 : 김란희(푸른꿈터원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운영위원)
14:50-15:00	휴식
15:00 16:00	▶ 토론자 토론 1.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이현숙(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토론 3.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토론 4. 고익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16:0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목 차

❖ 인사말

김상희 /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남인순 /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 발 제

1.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 9

박숙란 /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2.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 대안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19

김란희 / 푸른꿈터 원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운영위원

❖ 토 론 27

- 성윤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9

- 이현숙 /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35

- 윤원기 /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39

- 고의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43

인 사 말



김상희 (국회의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착취 문제를 진단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문제 접근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 착취에 있어서 '수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가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영역별로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아동·청소년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장과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논의를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특히 발제와 토론에 선뜻 나서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3.

국회의원 김상희

인 사 말



남인순(국회의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오늘 저희 포럼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로 '성매매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상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처리과정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알선자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성매매 피해자가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자처럼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박순란 변호사님, 푸른꿈터 김란희 원장님, 토론에 응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성운숙 연구위원님, 탁틴내일 ECPAT Korea의 이현숙 공동대표님, 법무부의 윤원기 검사님, 여성가족부의 고익수 과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차인순 입법심의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3.

국회의원 남인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입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0년 7월1일 시행), 2009년 내용을 전부 개정하며 법률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꾼 이후 법률의 내용과 체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관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매수자 및 그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감금등(여성가족부, 2013년) 다른 범죄피해가 함께 동반되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현행법상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에 대해 브라질 세계대회에서는 가정과 가족내,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와 사법시설, 지역사회와 직장 등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만18세미만의 개인에 대한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브라질세계대회, 2008). 제3차 세계대회 이전까지는 성착취라는 용어 앞에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국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상업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성착취 유형에는 성매매(prostitutio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sextourism),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ople for exploitation)가 있고(브라질세계대회, 2008), 성폭력, 성학대¹⁾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성매매는 성착취에 해당하므로 성착취피해자들이 착취의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1) 폭력이나 차등한 조건, 강압적인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성적 본성에 대한 신체적 침해, 또는 침해에 대한 위협(출처: 유엔CDU :Conduct and Discipline Unit)

간주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의 동의여부나 적극적 가담여부가 가해자나 알선범죄자들의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피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포르노그래피를 찍도록 유인, 알선, 계획(법 제48조-50조)한 경우 성매수 대상자(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중처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²⁾

전 세계적으로 성매수자와 알선범죄자들은 남자친구, 좋은 이웃, 러버보이 형태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저연령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는 <아청법논의팀>을 구성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타법과의 관계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실태와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는 성착취피해로 재정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여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장의 논의에 기반하여 어렵게 만들어 본 법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출처 :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한 처벌수위(성범죄법, 2003)

발 제

**발제 1. 대상 이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
: 법개정 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 2.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제 1.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

- 법개정 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

박숙란(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I. 들어가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4.9.29.][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이하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되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규정 및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및 관련 규정의 문제점,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문제점,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어떻게 개정 보호되어야 하는지, 성인과는 다른 지원방식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 및 관련 규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규정

제2조(정의)

제6호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7호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대상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3.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보호처분 관련 조항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³⁾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① 검사는 법

3) 2015. 3. 현재 중앙위기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의 10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는 보호처분과 5박6일간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캠프 또는 2박3일 심화캠프, 1년간의 사전사후지원 및 의료지원이 전부입니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I.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의 문제점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모순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제4호 "성매매피해자"의 정의규정 다목에서는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의 불명확함으로 성매매피해자의 해석으로 ① '청소년'이기만 하면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②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성매매피해자로 청소년이기만 하면 피해자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명백히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은 충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성매매피해자로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에 의해서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되지 않는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냐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는 성매매알선업자에 의해 강요알선, 유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매수자에 의해 유인될 것이며, 온라인상에서는 성인과의 채팅방이 알선 유인책이 될 것이며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에 의해 유인

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내에서의 모순

(1)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불처벌원칙규정과 보호처분의 처벌성을 내포한 제2항의 모순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1항에서는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항에서는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하여 불처벌규정의 제1항과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하게 하는 제2항의 규정은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상대방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되고,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 유인 권유에만 이르면 상대방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되는 모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성매수 전 단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유인, 권유'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전 단계의 유인, 권유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상대방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되고,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 유인 권유에만 이르면 상대방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⁴⁾

3.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2011헌가1)라고 하고 있습니다.

IV.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

1. 보호처분의 성격(강제처분, 벌,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서의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이다⁵⁾. 소년법 제53조에서도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규논문(신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도 '보호처분은 소년자신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행해진다.' 보호처분이 경우에 따라 [벌]

4)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시사항】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소년법(2006. 한국소년법학회) 292면 참조

을 수반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병각논문(소년보호 처분의 전과와 형가중)에서도 ‘문제소년을 발견한 경찰이 훈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으로 입건하면 그때부터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소년심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이후로도 오래도록 따라다니게 된다.’고 하면서 ‘이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⁶⁾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소년법원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까지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허용된다고 한다.’⁷⁾ 이 밖에도 대법원은 형법의 누범가중규정이 소년법에서 말하는 “자격에 관한법령”이 아니며,⁸⁾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전과가 소멸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⁹⁾.’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해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행해지고 있으며, 보호처분이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별]의 개념, 강제처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이 수사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2.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수사하여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법원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가 부적절할 경우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소년부로 송치한 경우 판사는 법원소년부로 송치 경우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자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

6) 대판 1990. 6. 26. 90도887;대판 1986. 7. 8. 86도963;대판 1973. 7. 24. 73도1255

7) 대판 1990. 10. 16. 90도1813.

8) 대판 1993. 2. 23. 93도69

9) 대판 1983. 2. 8. 82도 2896, 82감도626

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폭력, 상해뿐만 아니라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성폭력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상 성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호처분보다도 더욱 중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¹⁰⁾

V.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규정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이란 규정을 둠으로써 현행 피해아동청소년 또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되어 피해아동청소년이 받는 보호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처벌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피해자 국선선정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의 상담을 받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아야 하며, 자활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VI. 나가며

1.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삭제 및 성인지원방식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 필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대상아동청소년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이 될 경우에도 성인지원방식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체계는 성폭력피해자나 성인성매매피해자의 지원체계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 성인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재로 인한 가출, 가출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점,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는 점등이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의 위기지원시스

10) 성매매처벌법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템(cys-net)은 청소년 성매매문제에 접근하고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또한 전국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 지원시설 즉 쉼터라고 하는 14개의 청소년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도 청소년업무 담당에서는 성매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주무부처에서는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한 정책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터넷 모니터링, 홍보, 아웃리치,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시설을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강요자, 성매수자에게 처벌강화, 매개시스템의 인터넷 개발자 알선자 엄중한 처벌, 인터넷 인터넷성매매방지 및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모니터링 필요할 것이며, 교육,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성착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보호, 인권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과 성착취 피해를 예방해야 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대로 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충분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2.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의 삭제 등 향후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논의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엑시트,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는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1)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개념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구축,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정비, 3)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대응 4)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의 글 (출처: 2013. 7. 15.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을 위한 워크숍 -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의 발표문)¹¹⁾ 중 '4. 아청법

11) 아청법 논의팀에서 법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1차 워크숍 <2013년 7월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을 위한 워크숍>자료집과 두 번째 워크숍 <2013년 10월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워크숍(2)-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 지

개정의 방향과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개념 삭제

현행 두 법률(아청법과 성매매 처벌법)의 모순과 충돌을 바로잡고 국제법의 기준에 맞는 법의 개정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아청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된 성범죄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지게 하기 위해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현행 법률의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삭제하였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시킨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는 통일하여 전문기관에서 각 피해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5조와 제46조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에 관한 조항은 제45조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시켰다.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장에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법상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실시해오던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해왔던 기관을 개정법에 전문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조사, 심리재판함에 있어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무로 명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개정법률안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장에 제8조의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을 신설하였고, 제12조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변경하였으며, 나아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원 방향에 대한 대안 찾기>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으로, 제14조 강요행위 등은 강요 등으로, 제15조 알선 영업행위 등은 알선영업 등으로,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로 변경하여 자칫 '행위'라는 용어 때문에 '범죄'라는 사실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17조, 제18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 상해·치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 살인·치사를 신설하였고, 신고의무자 등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장에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을 삽입하였다. 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의 장은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였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장에서 역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제8장을 신설하여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하고 이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자활 및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대응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15조 알선영업 등의 장에 정보통신망에서 유인·권유·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게시 또는 공유한 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민간단체와의 협조 의무, 정보통신망에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신용카드업자 등의 신고의무와 제34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인터넷 전문가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 앱개발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게 하였다.

4)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개정 법률안에 분명히 하였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3년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발제 2.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 대안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김란희(청소년지원시설 푸른꿈터)¹²⁾

1. 들어가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해체 및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출과 비행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력과 성착취(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다. 201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은 13,462명으로 남성 청소년 8,825명의 1.5배에 이르며, 신고 되지 않은 가출 청소년의 수는 연간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IT강국이라는 국제적 명성은 조건만남, 채팅, 음란물, 섹스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인권침해와 범죄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10명중 9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여학생이 94.8%로 남학생 88.3%보다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81.5%(5명 중 4명)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에서 2004~2008년(5년간) 청소년 성매매 사건 5,165건 중 81%(4,230건)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보고를 뒷받침한다.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대상,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여 특정 청소년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¹³⁾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고 대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2) 광주에 있는 청소년지원시설 원장이며 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운영위원입니다.

13) '07~'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과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59.6%가 가출상태, 40.4%가 가출아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균연령은 15.97세였다.

2. 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 정책

현재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통합체계가 아닌 청소년복지 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노출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각각의 정책 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몇몇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성매매 청소년을 단일 범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름 불리는 성매매 청소년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청소년 성매매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으로 가출, 학업 중단 및 실업, 폭력·성매매·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등을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 보면서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통합적 지원을 해주는 체계이다.

2015년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 조기발견과 십대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2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담인원 중 남자 33,952명, 여자 23,626명이었으며, 내용별 상담실태는 총 상담 57,577명 중 '성'상담이 432명이었다. 긴급구조를 통한 입소 인원은 남자 105명, 여자 115명으로 이중 여자청소년의 경우 광주여자단기쉼터 29명, 푸른꿈터 1명이 연계되었다. 이 운영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가출 팸(Family) 형성 급증 등 가출청소년들의 자가 동거형태 증가로 인한 입소 청소년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들이 더 많이 가출하고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될 우려가 큰 현실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광주의 사례를 통해서 CYS-Net을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긴급구조, 전문적 성매매 상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 성매매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5. 29 시행되면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미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발견하여 지원시스템에 편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사이버 성매매이며, 가출팜 형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증가, 재학생의 성매매 노출, 성매매가 성인기까지 지속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포괄할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에서 조기차단과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온-오프라인 상담과 아웃리치, 성매매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등 일차적 접근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청소년

우리사회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7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고 있으며 제39조 2항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은 아청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해 청소년성장캠프에 참여하여 40시간 교육을 받는다. 현재 청소년성장캠프의 교육대상은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상담과정이수결정이 된 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이 통보된 청소년, 성매매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병과된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에서 추천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사이버포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피해 노출 청소년이다. 교육 수료 후 1년간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제2조 7호에서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가 성적 착취이며 학대 행위인지를 모호하게 하면서 성 매수된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에서의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 제5조에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예방교육, 지원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원시설 중 청소년지원시설이 분리되어 있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포래상담¹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을 통한 긴급지원을 상담소 업무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가출의 증가 및 가출팜의 형성,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 지원체계에 청소년 성매매관련 업무를 편성한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사회환경에 따라 덧붙여지고 있다.

3.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른 조기발견, 보호지원, 자활대책 등 전문적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012년 6월 서울시가 가출 청소년 175명을 대상으로 한 '십대여성의 가출과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40.7%는 성폭력 피해 경험 이 있으며, 4명 중 1명(25%)은 성매매 피해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5.3%가 성산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이야기한다. 성매매와 성폭력, 성폭력과 성매매의 연속성은 사안 발생에 따른 처방이 아닌 청소년 성착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4)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상담원이 직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가출, 조건만남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청소년과 대화상담(2013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73)

15) <http://www.stv.or.kr>, 2012년 9월 24일자 '서울시, 가출청소년 성매매방지 특별대책' 수립 기사 인용

1)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인신매매'라는 인식 전환

여성가족부가 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실제로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07년 16세에서 2012년 15.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가 성문화 중 하나이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여성의 성(sexuality)은 왜곡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성을 사는 남성의 연령대는 제한이 없지만 성을 파는 여성의 연령대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과열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성을 파는 여성의 나이가 낮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성매매가 그러하듯 청소년 성매매 역시 어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팔수 있는(알선) 구조와 문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청소년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알선과 수요의 증가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모집·유인하면서 폭력과 착취의 구조에 놓이게 한다. 아동법 제4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와 체계적 관리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합식, 방송수업 형태의 일회적 교육이 아닌 반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도 포함시켜 아동들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 및 알선자 등 처벌 강화

C(17)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약간의 용돈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큰돈을 만지다 보니, 그만두지 못하고 1년간 조건만남을 하다 그만두었다. 이후 쉼터에 입소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성 매수자 2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으로, 다른 매수자 3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음에도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된 것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가해자 진술 때문이었다. 또한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있는 필자가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동석을 하다보면 성 매수자들

은 한결같이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데 누가 청소년으로 보냐?", "혹시나 해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20살이라고 했다", "저 아이가 먼저 접근했다", "가출했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차비까지 주었다", "순간 정신이 나갔다" 등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범죄로 보지 않고, 특히 사이버 성매매의 경우 1:1의 만남으로 인식되면서 성 매수가 된 아동·청소년 또한 '문제아'라는 낙인과 함께 성매매 유발자로 분류되며 성 매수자 처벌이 악화되고 있다.

성매매 예방에서 수요의 차단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는 법의 강력한 집행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임을 확인하고 확산시키면서 발생한다.

2)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행 아청법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 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 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등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산발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에 따라

- (1)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아웃리치 활동
- (2) 쉼터의 규칙과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전문화된 24시간 드랍인 센터
- (3) 성매매 전문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 (4) 생계와 독립을 위한 자활지원
- (5)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 (6) 실태조사 등을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이어야 한다.

3)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 명확히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야 한다.

4. 나가며

아청법 제1조 목적에는 (중략)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중략)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대상아동·청소년은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의 의무화와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이외의 청소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과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

토론문 1.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2. 이현숙(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토론문 3.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토론문 4. 고익수(여성가족부 이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숙란 변호사님 발제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훌륭하신 발제를 공감하며 읽다가 결론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질에서 있어서는 변호사님과 동일한 아동청소년을 향한 진심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박변호사님은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규정에 있어서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님은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를 1) 단순히 '청소년' 내지 2) '성매매로의 알선, 유인된 청소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내포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분명히 분리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는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서는 순수한 피해자와 대상아동청소년을 분리할 수 없고 그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상담, 더 나아가 보호처분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제2조 7호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된'이라는 의미가 '성매수자와 직접 합의한'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 거래는 먼저 제 3자에 의해 이루어진 후 '성매수자와 성적관계를 맺은'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그것이 '강압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호성은 뒤에 변호사님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신 점과 부분적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 내의 1항과 2항의 모순점에 대한 지적 역시 타당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는 저는 1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차라리 2항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대상 아동청소년이 되고 미수에 그친 유인 권유일 경우 상대방이 피해아동청소년이 되는 모순에 대한 지적 역시 동감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을 좀더 세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즉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수에 이를 청소년, 즉 대상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기수에 이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위의 동기 등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여로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인·권유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는 규정이나 기수일 경우 무조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규정 역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원판례가 미수일 경우 성매매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다는 사안을 보면 이 경우 '성매매 의사가 있다'라는 말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성격을 적시한 것이고 대상아동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셋째,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해보입니다. 다만 성인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의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효과적 전환에 대한 입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적규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개념이 사라진다고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결국 청소년성보호법보다는 성매매특별법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남는 문제는 일례로 실질적으로 청소년성매수자의

특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성매매가담행위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문제청소년들이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 그리고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이 청소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인정합니다. 다만 법은 환경을 고려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실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과 기록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그 문제에 국한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정리해보면, 성과 관련한 범죄에 관계된 청소년들을 모두 피해자로만 보는 입장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모든 범죄자가 본질에 있어선 피해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은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에 따라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일 뿐 성인의 나이에 속한 사람이 실제 법치주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변호사님이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구조적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피해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면 환경에 의해 그렇게 되었든, 선천적으로 그렇든 아동·청소년들이 모두 순진무구한 범죄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실질적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벌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미래가 지장을 받도록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인간(人間)은 '사람사이' 즉 '관계'의 존재입니다. 최근 나온 결과에 따르면 싸이코패스의 경우도 바람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자랄 경우 훌륭한 대학교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어

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가가 그 존재의 인격과 성품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은 환경적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냐를 넘어 얼마나 인간다운, 또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개념을 처벌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교화라고 하느냐는 본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은 아동·청소년에게 '하나의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아동·청소년을 동일한 범죄자들과 지내게 하거나 비인간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동·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소수의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들을 '공존, 상생, 배려, 이해'등이 형식적, 내용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공동체를 찾아 그 곳에서 일정기간 돌봄기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분 발제자들의 정책개선제안과 지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류의 사안과 관련하여 저의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늘 품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교수이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대 사회의 불의한 모습과 방황하는 시대상을 놓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불의한 이유는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정의조차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서입니다. 법의 규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정말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동·청소년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진정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란희 원장님의 발제에 대하여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은 변호사님의 글에 모두 소개되었고 김란희원장님은 특히 성매매청소년을 모두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선도보호 대상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대상아동·청소년

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님의 글에 대한 입장정리를 통해 말씀드렸고 실질적 지원체계의 아쉬움은 아마도 아동·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정책제언도 하고 또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원시스템 내에 성범죄관련 청소년들, 그들이 피해자이든 대상자이든, 그들을 실질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상황으로 현존하며 동시에 그럴 의지가 분명한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상적입니다. 사실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많을 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일부분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하지 않고 도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이든, 민간시설이든 관계와 환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접촉, 그리고 관리가 되어 질 수 있다면 법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순진한 청소년들의 교화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토론

이현숙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보듯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피어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음에도 '연인 관계'였다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판결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맘껏 이용하는 대중매체, 그러나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는 보수적인 모순적인 문화를 접할 때면 우리의 법체계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항상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항상 아동·청소년 인지적 관점으로 우리는 법률과 정책을 바라보아야함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착취에 대해 2008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제3회UN아동성착취근절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리오 선언문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인지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도 함께 보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의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술적 정의 대신에 동의의 유무, 관계의 대등성, 강요성을 성폭력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동의는 'Yes'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준코 재인용 2006, Ryan & Lane, 1997) △연령, 발달수준,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의미인지 이해, △사회의 표준적인 반응을 이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동등하게 존중된다는 전제, △자발적인 결정일 것, △정신적, 지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연령 기준은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만16세다¹⁶⁾. UN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 기준은 만19세 미만이다. 합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성매매도 대상이 어리면 성적 착취이고 폭력으로 보는 연령 기준이 평균 16세 많게는 21세인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은 낮은 편인 만13세 미만이다.

‘UN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는 제8조와 9조에 피해자로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선처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숙란 변호사가 제안한 ‘대상 청소년’의 규정을 삭제하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아가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청소년은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성인이라면 당연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 모두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맞는 특성화된 지원체계가 사각지대라는 발제자 의견에도 동의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일반 가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 빈곤 청소년, 학대 피해 청소년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앞에 열거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문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존방식을 터득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개입하고, 상담과 치유, 자립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제 발로 찾아오거나 경찰에 검거되어 오기 전에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신뢰를 쌓

16) 출처 : chartsbin.com/view/hxj

는 전문 아웃리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되었던 현 CYS-net의 전신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참고하여 24시간 상담, 구조, 아웃리치, 긴급보호, 심리치료, 의료 법률지원, 학업지원 등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웃리치와 구조, 긴급보호를 통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유대감을 충분히 형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연계는 기능상의 연계가 아닌 청소년의 특성, 기관과 기관 근무자의 특성 까지도 고려하여 청소년과 잘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후지오카 준코(2006), 박병식 역, 성폭력의 이해와 치료교육, 여성가족부
chartsbin.com/view/hxj(2015. 3. 18)

UN아동매매·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UN아동권리협약

진정한 동의 있으면 무죄, 배포 목적이면 유죄, 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동영
상 엇갈린 판결 (동아일보 2015.2.15.)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 대법원 "사랑이다"(중앙일보
2014.11.25.)

토론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에 대해 발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통일해서 규율하고,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삭제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처벌인 보호처분을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로서의 아동·청소년 개념이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것인지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는 결국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

성매매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례가 다양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일 뿐 설령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아가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을 구분하지 말고 성매매의 피해자로 보는 것은 일응 경청할 만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수자에 의해 유인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아동·청소년은 모두 성매매피해자이고 따라서 아청법에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니고 피해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실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모두 성매매수자에 의해 유인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에 모든 청소년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피해자임을 아청법에 명시할 경우, 성매매처벌법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아동·청소년에 대해 한 법은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법은 '성매매피해자'라고 규정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여러개로 분산되어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혼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었고, 통합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 다만,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란희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 아청법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의 전체적인 체계부터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성매매피해자 여부나 성매매 처벌규정 등을 성매매처벌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필요한 보호 조치들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사실상 처벌과 같으므로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게 되는 등 보호처분을 처벌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청법의 목적 규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안에서 제시하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도 결국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벌과 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아청법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보호처분도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이고, 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근거로 보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처벌이라는 취지이지만, 아청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형벌’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감명령 등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피해자들이 다시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처분의 내용이 다른 폭력범죄 등의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맞게 보호 조치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아청법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성매수의 상대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보호 내지 재활을 통해 다시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특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위기에 처하는 청소년 중 불우 환경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갈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체계 강화, 드랍인센터 설치, 온·오프라인 상담 및 봉사활동, 의료·법률 지원, 성매매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성매매 상담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하셨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성매매나 기타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의 해체 및 불안정성 증가를 가출 및 그로 인한 성범죄 노출의 원인으로 지적하시고,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 노출 청소년들의 사후적인 보호 지원책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는 등 가정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쉽터 규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수(여성가족부 청소년성보호과장)

1.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는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법 제2조 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재화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며(법 제38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상담과정을 이수(법 제39조 제2항)하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판사는 교육 등(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법 제40조제1항)을 할 수 있다.

원래 대상 아동·청소년은 법률 제6261호('00.7.1시행)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 당시 대상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청소년 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06.6.30.부터 청소년 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대상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61호 2000.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 (소년부 송치)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801호 2006.6.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II. 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사범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2천여명이 검거되고 있으며, '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64명이 검거되어 이중 약 5.5%인 113명이 구속되고 1,951명이 불구속 대상이 되었다.

<연도별 청소년성매매 단속현황(경찰청)>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04년	2,680	712	1,968
2005년	1,946	295	1,651
2006년	1,745	149	1,596
2007년	2,582	126	2,456
2008년	2,112	81	2,031
2009년	2,182	125	2,057
2010년	1,345	56	1,289
2011년	2,006	41	1,965
2012년	2,676	120	2,556
2013년	2,078	101	1,977
2014년	2,064	113	1,951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청소년 성보호법」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치유와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재유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사실이 통보된 대상청소년, 또는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 및 사이버포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이며, 1개의 중앙교육센터 및 10개의 지역교육센터에서 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1년)로 성매매 재유입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의 40시간 과정으로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

분 야	프 로 그 램	진행시간
심리진단	다면적 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	3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댄스테라피, 건강검진 등	6
자존감 향상	개인브랜드가치 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 등	3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 등	6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법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 등	9
탈성매매	탈성매매여성과의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등	5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 등	6
기 타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등	2

• 기본과정 (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 20시간), 사례관리(1년)

연도별 치료·재활교육 인원을 살펴보면 연간 300여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00여명이 사전·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 355명이 교육을 받고 1,021명이 사전·사후관리를 받았다.

<연도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인원>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교육 운영	255	372	333	355	278	355
사전·사후관리	512	553	787	1,077	1,034	1,021

• 여성가족부「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안내 : 붙임1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업·진학 및 자립·자활 등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시설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구 분	시설 수	입소·이용기간	주 요 기 능	비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5개소	19세 원칙 21세까지 연장	숙식 제공 및 상담, 의료·법률 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연계 지원 등 진학교육 및 취학연계 지원 등	생활 시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1년	의무교육, 자활교육 사회적응능력 강화교육 지원	이용 시설

- 13개, 729명('10년)→14개 611명('11년)→14개 646명('12년)→14개 565명('13년)
- 1개, 47명('10년)→ 2개, 102명('11년)→ 2개, 98명('12년)→2개 83명('13년)

Ⅲ. 대상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필요성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매매피해 청소년은 다른 성범죄 피해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이며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단지 성매매의 “대상”으로 조사받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상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보호처분 제도를 둬으로써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이 이를 이용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성매매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호관찰·수감명령·보호시설 위탁 처분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소년성매매 피해자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제도 삭제를 검토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V. 개선 방향(의견)

성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지위에 있으므로 성매매의 자발성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르다. 청소년은 위기가정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취약한 채 금전적으로 유혹되어 생존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는 사실상 비자발적인데 이렇게 자발성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행 대상청소년 제도는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을 치유·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가해자 등에게 악용되어 신고가 곤란하고 인권침해나 피해사실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교육을 세분화하고 사후관리(심화교육·상담멘토링 등)를 강화하여 성매매 재유입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경찰청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입건·훈방하거나 검찰청에서 교육이수를 명령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하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 체계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검찰청에서는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할 때와 경찰청에서는 피해청소년을 입건·훈방시 여성가족부로 즉각 통보를 하여 성매매 치료·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검찰청 통보 인원 : ('11년) 27건 → ('12년) 11건 → ('13년) 6건 → ('14년) 5건
- 경찰청 통보 인원 : ('11년) 131건 → ('12년) 29건 → ('13년) 45건 → ('14년) 136건

- 붙임 :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안내

붙임 1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안내

□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검사의 교육과정 등 이수명령 성매매 피해청소년, 경찰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발견 통보 청소년 등('14년 355명 교육수료)
- (교육방법)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전국 10개소)에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청소년성장캠프)
 - 교육시간 : 40시간
 -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날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어제의 나	소중한 나	또 다른 나	내일의 나	당당한 나
오전	사전검사 - OT	심리치유 프로그램 - 동작치료 - 미술치료	자존감 향상 - 개인브랜드 가치 높이기 - 롤모델 만나 기 - MBTI	사회통합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통합 - 진로 프로그램	수료식 - 10년 후의 나를 만나다
오후	심리검사 - MMPI 등 - 관계형성	성주체성 향상 - 성교육 - 건강검진	성주체성 향상 - Sexuality - 관계형성	성매매 바로알기 - 100분토론 - 생존자증언	사회통합 - 학교탐방 - 직업체험 - 미래설계	

○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희망키움 과정)

-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 교육대상 : 청소년성장캠프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 직업 및 자활관련 프로그램
 - 성인식 및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 자기성찰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 심화교육(희망키움)과정은 '14년 신규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은 각 지역교육센터에서 교육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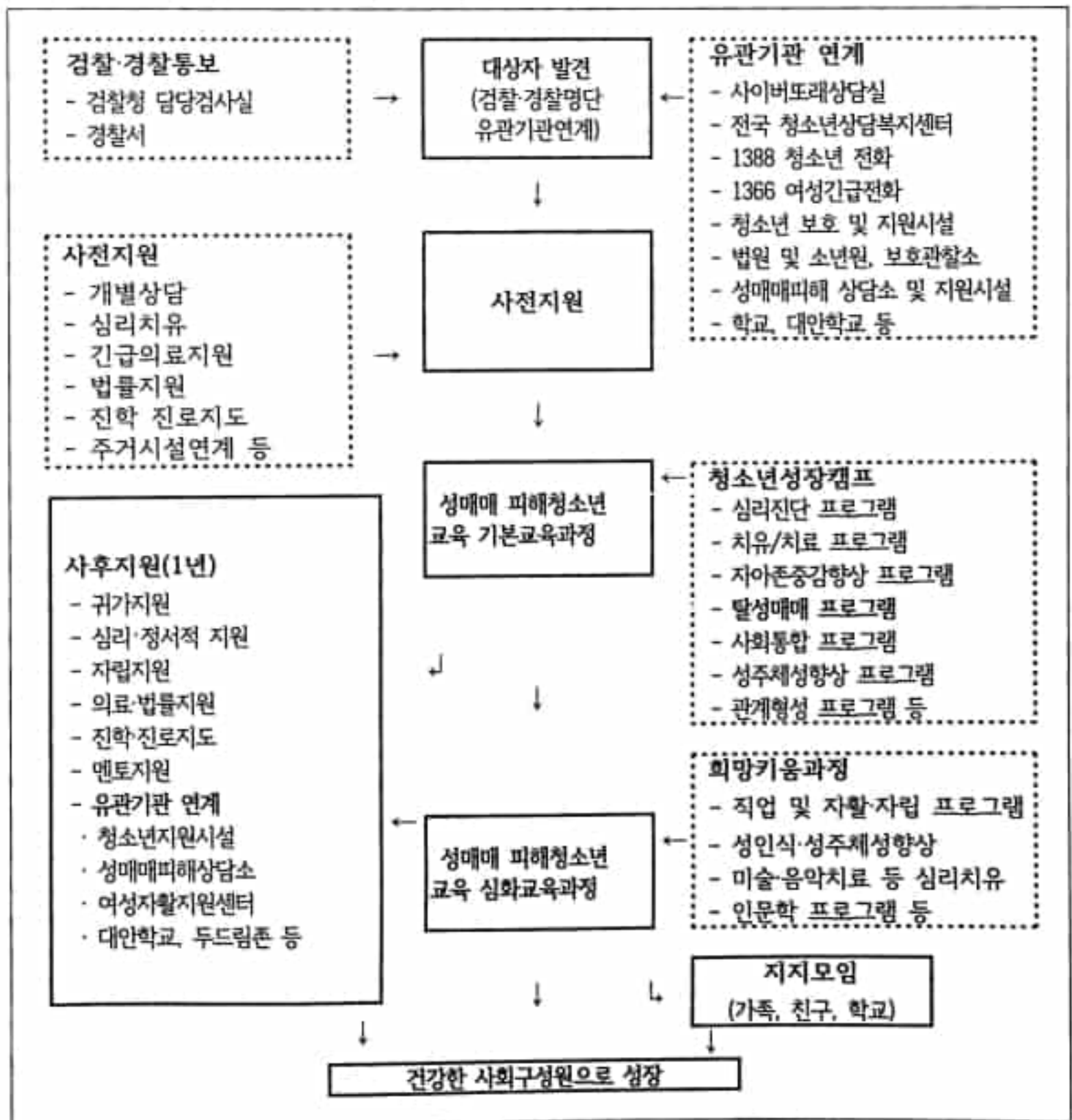
□ 상담 및 사전·사후 지원

- 지속적인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을 지원
-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원들이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해 피해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사후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주 요 내 용
귀가지원	가출 중 또는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교육대상자	· 위기개입 출장 및 귀가 동행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교통비 및 식비 등 지원
주거지원	가족갈등 및 가정해체로 인해 귀가가 어려운 교육대상자	· 단기쉼터, 일시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지원시 설 입소 연계 · 연계 시 교통비 및 식비 등 지원 · 성인자립시설 연계, 관련기관 동행
복학·진 학 지원	자퇴 후 복학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학교 정보 제공, 등교 동행 · 대안학교 추천서 및 면접동행, 교사면담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교통비 및 학용품 등 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퇴 후 검정고시 준비를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대안학교 연계 · 교재 및 원서료, 합격선물 등 지원 · 검정고시 관련 학원 및 프로그램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자격증 취득	희망직종 및 취업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관련기관 연계 및 학원비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모기관 후원 등) ·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취업지원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커피동물원(십대자립훈련), 희망직종 자원봉사 연계 · 두드림존 연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연계(노동부) ·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 희망직종 근무지 방문 및 지지상담
법률지원	성매매, 기타 문제 등으로 재판 또는 경찰조사 중인 교육대상자	· 경찰서 및 법원 동행, 법원 내 소견서 및 청원서 전달, 보호 관찰소 업무 협조 · 법률지원 시 교통비 등 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주 요 내 용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연계
의료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 등 의료개입이 필요한 교육대상자	· 부인과 진료 및 처방지원, 치료비 일부지원 및 병원 동행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및 성매매피해 청소년쉼터, 신경정신과 등 관련기관 섭외 및 연계

□ 사업 흐름도



□ 위탁교육기관 현황

센터명 (운영주체)	전화	팩스	주소
중앙교육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1509	02-735--2051	(100-859)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3층
서울교육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02-6052-1318	02-2690-1255	(157-010)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30-32 동남빌라 B01호
경기교육센터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070-8232-1319	031-405-2156	(426-85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파동 519-14 203호
인천교육센터((사)인천 여성의 전화)	032-527-0090	032-527-0093	(403-826)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5번길 18-4(부평동, 형우빌딩 2층)
대전교육센터 (성공회대전나눔의집)	070-4122-7172	042-221-1318	(302-123) 대전시 서구 둔산3동 2077번지 대림빌라 301호
부산교육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23	051-303-9608	(617-814) 부산시 사상구 모덕로 82 (덕포2동 247-6)
광주교육센터 (광주YWCA)	062-522-1389	062-522-1383	(503-822) 광주시 남구 양림동 108-5 광주YWCA 가정상담소 3층
대구교육센터((사)대구여성회)	053-427-1319	053-424-1245	(700-421)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232-3 보성빌딩 4층
강원교육센터 (춘천길잡이의집)	033-241-1387	033-254-8295	(200-04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 67-1 시민복지회관 3층
전북교육센터((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063-288-8297	063-282-4248	(560-023)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4-2 3층
평화교육센터 (평화의샘)	02-825-1275	02-825-1292	(156-832)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상도2동 361-26)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 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5년 3월23일 토론회 자료집**

주최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문의 및 연락처

남인순의원실(02.784.598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5년 3월23일 토론회 자료집

주최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문의 및 연락처

남인순의원실(02.784.598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